보건복지부

보다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한센인피해자지원 지자체보조사업 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1. 질병정책과-178(2018.1.8.)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한센인피해자지원 지자체보조사업 3분기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조속히 해당 시스템(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신청하시어, 위로지원금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과목 : 091-3500-3539-3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3분기) 1부
2. 시도별 교부내역서(3분기)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생활보건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경기도지사(보건위생담당관),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보건의료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주무관 안성웅 질병정책과장 전결 07/13 김기남

협조자

시행 질병정책과-4413 (2018.07.13.) 접수 생활보건과-14970 (2018.7.13.)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질병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511 /전송 044-202-3928 / asu9107@korea.kr / 비공개(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천원)*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6,940,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서울)		52,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부산)		372,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대구)		70,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인천)		129,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광주)		3,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대전)		54,000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천원)*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울산)		88,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세종)		50,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기)		477,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강원)		156,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충북)		82,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충남)		100,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전북)		1,301,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전남)		1,252,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북)		1,314,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남)		1,344,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제주)		1,800			
미통지		87,400			

○ 보조비율 : 국고 100%

○ 사업내용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 지급

□ 교 부 목 적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500 암및원폭한센인지원	3539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300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330-01 지자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3/4분기)	교부잔액	비고
합 계	6,940,000	4,796,820	2,055,780	2,055,7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서울)	52,200	36,540	15,660	15,66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부산)	372,600	260,820	111,780	111,7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대구)	70,200	49,140	21,060	21,06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인천)	129,600	90,720	38,880	38,8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광주)	3,600	2,520	1,080	1,0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대전)	54,000	37,800	16,200	16,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울산)	88,200	61,740	26,460	26,46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세종)	50,400	35,280	15,120	15,12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기)	477,000	333,900	143,100	143,1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강원)	156,600	109,620	46,980	46,9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충북)	82,800	57,960	24,840	24,84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충남)	100,800	70,560	30,240	30,24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전북)	1,301,400	910,980	390,420	390,42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전남)	1,252,800	876,960	375,840	375,84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북)	1,314,000	919,800	394,200	394,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남)	1,344,600	941,220	403,380	403,3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제주)	1,800	1,260	540	540		
미통지	87,400				87,4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년 7월 일

보건복지부장관